

사전투표기간 전 투표함 보관장소에 봉쇄·봉인한 우편투표함 비치

일부 언론 및 SNS 등을 통해 사전투표기간 전 투표함 보관장소에 봉쇄·봉인한 우편투표함이 비치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 발송(선거일전 10일까지) 후 즉시 우편투표함을 비치합니다.
- 우편투표함 비치 시 정당추천위원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함 내·외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·뒤 자물쇠 2곳을 봉쇄·봉인하고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합니다.
- 투표함 비치 완료 후 보관장소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개폐부분을 정당추천위원과 사무국(과)장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출입을 통제합니다.
- 우편투표함 (추가)비치·관내사전투표함 적치, 우편투표 투입, 개표소 이송을 제외하고 내·외부인의 출입은 일절 금지됩니다.
- 한편,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은 시·도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24시간 확인 가능하며, 중앙¹⁾ 및 구·시·군위원회에서는 열람 신청 후 근무시간 중(공휴일 포함)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) 4. 5. ~ 4. 10. 기간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이 지정한 1인에 한해 야간 열람 허용